

청년인턴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

대전고등검찰청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9일
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(응시번호 순)

● 청년인턴

응시번호	성명
1	강 * 연
2	곽 * 린
3	김 * 진
6	송 * 조
7	정 * 주
8	조 * 지
총 6명	

※ 서류전형 합격자는 별도 문자발송 예정

2.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

- 제출기간 : 2024. 3. 29.(금) ~ 2024. 4. 3.(수) 18:00
- 제출방법 : 제출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접수처에 방문 제출
 -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'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재중' 기재

- 택배·퀵서비스, 인터넷 제출 불가
- 방문 제출 시 근무시간인 09:00~18:00 (12:00~13:00 제외) 내에만 제출 가능
- 제출서류 :
 -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(공고문 상 별지서식 제1호, 서명필수) 1부
 -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 포함, 최근 3개월 이내) 1부
 -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별지서식 제2호, 서명필수) 1부

※ [우 : 35237]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(둔산동 1390)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팀

3. 면접시험 일정

- 면접일시 : 2023. 4. 4.(목) 14:00
- 면접장소 : 대전고등검찰청 8층 상황실
- 면접방법 : 개별면접
- 주 소 :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
- 대기장소 : 대전고등검찰청 8층 중회의실

4. 응시자 유의사항

-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시고,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8층 중회의실 (면접시험 응시자 대기실)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면접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기타 문의 : 대전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팀 (☎ 042-470-3243)

5. 최종합격자 발표

- 발표일 : 2023. 4. 15.(월)
-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(www.spo.go.kr/highdaejeon/index), 나라일터 (<http://www.gojobs.go.kr>)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. .

성명 : (서명)

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귀하

